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구역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면적	m²
	위 치		

사업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목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개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종류 (근거 법령)		사업기간	
	자금계획	총 액	천원	
		국내자본	천원	
외국자본		천원		

구역 내 토지 현황							
일련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등기상 대지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2							
3							

구역 내 건축물 현황								
일련번호	행정구역	지번	종류	동·호수	면적(㎡)	등기상 건축물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단독주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
아
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예비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주민대표단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예비사업시행자만 제출합니다)
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시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